정책연구 2023-45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A Study on 2024 Living Wage in Gyeonggi-Do

김을식 외
kuspia@g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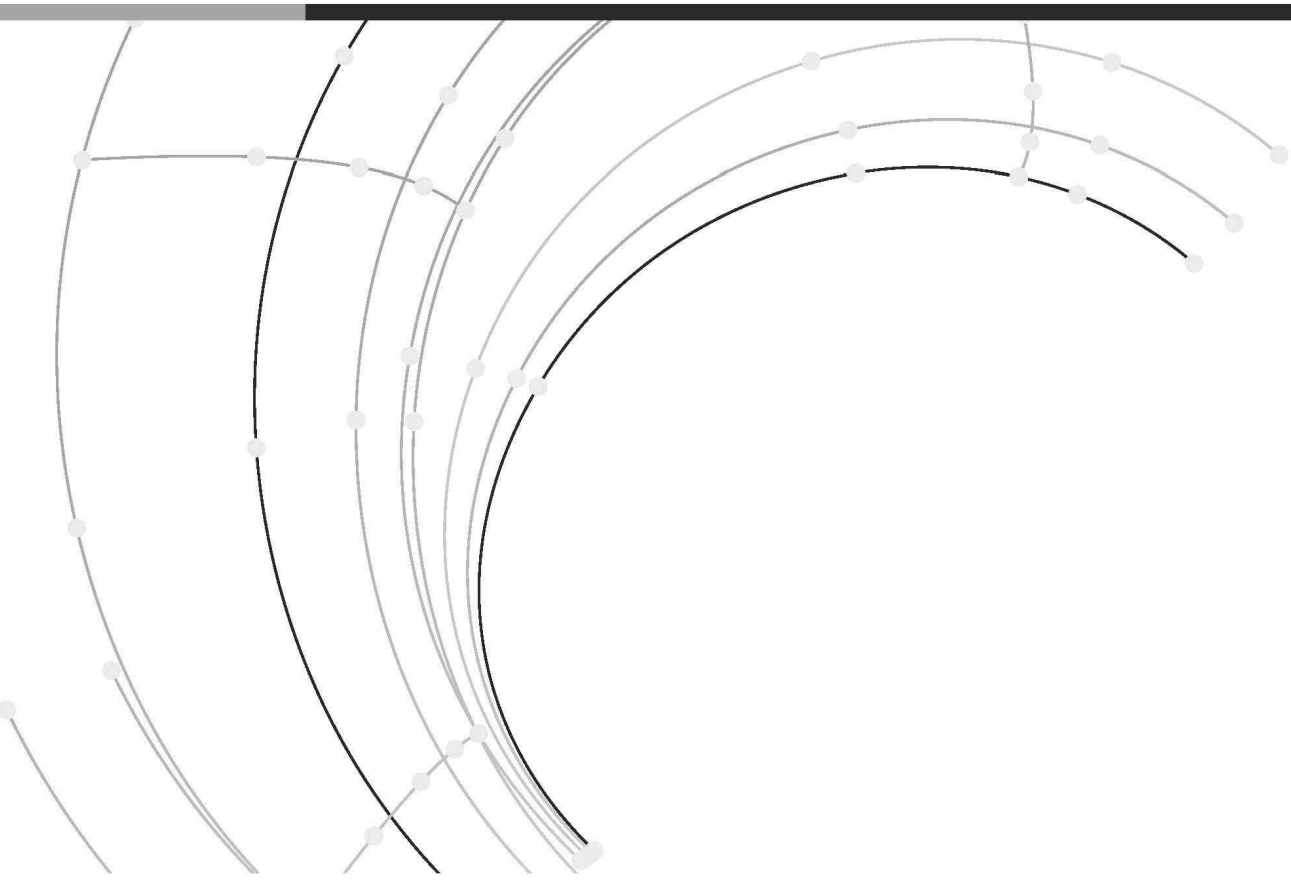

www.gri.kr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RI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23-45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A Study on 2024 Living Wage in Gyeonggi-Do

연구책임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군수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한영숙 (경기연구원 연구원)

인쇄 2023년 10월
발행 2023년 10월
발행인 주형철
발행처 경기연구원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3
ISBN 979-11-6853-212-0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OLICY
PROPOSAL

정책건의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분석기준을 4가지로 분류함. 4가지 분석기준은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생활임금 기준임. 이렇게 도출된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안)은 11,159원(1안)~12,017원(3안)임

- 1안은 11,159원으로 산출 [상대빈곤 기준선+(주거비+교육비) 추가]
- 2안은 11,446원으로 산출 [상대빈곤 기준선+(주거비+교육비+문화여가비) 추가]
- 3안은 12,017원으로 산출 [상대빈곤 기준선+(주거비+교육비+문화여가비+교통비) 추가]
- 4안은 11,780원으로 산출 [상대빈곤 기준선+(주거비+교육비+교통비+통신비) 추가]

❑ 2024년 31개 시군 생활임금 산정안

○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31개 시군의 2024년 생활임금안을 도출함. 특히 4안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은 성남시로 11,913원('23년 대비 1.6% 상승)이고, 가장 낮은 생활임금은 동두천시로 10,804원('23년 대비 7.3% 상승)으로 산정됨

❑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 민간부문으로 확산시 적합 기관으로는 첫째 공공성이 있는 경기도내 대학, 중대형 병원, 은행, 초중고 등이고 둘째 지자체로부터 R&D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을 받는 관내 기업 및 단체 등이며 셋째 지자체 관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자활센터, 복지센터 등으로 분석됨

키워드 경기도 생활임금, 31개 시군 생활임금, 민간확산

CONTENTS

차례

정책건의

제1장 | 서론 _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내용 및 범위 ····· 4
   2) 연구 방법 ·····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및 특성 _ 7

1.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 9
   1) 생활임금 정의와 적용 대상 ····· 9
   2)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과 결정 과정 ····· 9
2. 경기도 생활임금 특성 ····· 11
   1) 생활임금 변화추이 ····· 11
   2)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비교 ····· 13
   3)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격차 ····· 16

제3장 |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_ 21

1.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 23
   1) 기본 전제 ····· 23
   2) 최소한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비 재산정 ····· 25
   3) 사교육비를 반영한 교육비 재산정 ····· 26
   4) 문화여가비와 교통비 재산정 ····· 27
   5) 요약 ····· 28
2.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과 2024년 생활임금 산정안 ····· 30

1) 가계지출기준 ····· 30
2) 근로소득기준 ····· 33
3) 가계소득기준 ····· 36
4) '22년 근로자 임금 증가율을 고려한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38
5) 종합: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39
6)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 ····· 40
3.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 ····· 42
1) 산정기준 및 방법 ····· 42
2) 31개 시군 생활임금 산정 결과 ····· 44

제4장 | 결론 및 정책제언 _ 49

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51
2. 2024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안 ····· 52
3.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 54

참고문헌 _ 57

Abstract _ 59

부록 _ 61

TABLES

표차례

[표 1-1] 과제 추진계획 ····· 4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6
[표 2-1] 경기도 생활임금 추이 ····· 11
[표 2-2]「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신인도 평가기준 관련 공고 개정내용 ····· 12
[표 2-3] 생활임금 서약제 참여기업 현황 ····· 12
[표 2-4] 생활임금 관련 가점 부여 현황 ····· 13
[표 2-5]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 및 수혜 인원 ····· 13
[표 2-6] 연도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비교 ····· 14
[표 2-7] 2023년 생활임금 현황: 전국 광역자치단체 ····· 15
[표 2-8] 2023년 생활임금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 16
[표 2-9]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 17
[표 2-10]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초 자료 현황 ····· 19
[표 3-1]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4
[표 3-2] 산정기준별 생활임금 산정방법 ····· 29
[표 3-3] 가계지출기준,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 통계 ····· 31
[표 3-4]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가계지출기준 ····· 33
[표 3-5] 생활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추가로 반영되는 가계지출 항목 ····· 34
[표 3-6]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근로소득기준 ····· 35
[표 3-7] 생활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추가로 반영되는 가계지출 항목 ····· 37
[표 3-8]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가계소득기준 ····· 38
[표 3-9] '23년 생활임금×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공식 ····· 38
[표 3-10]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적용 ····· 38
[표 3-1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최종안 ····· 40
[표 3-12]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41
[표 3-13]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생활임금(4안 기준) ····· 46
[표 3-14]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생활임금(4개의 안) ····· 47
[표 4-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최종안 ····· 52
[표 4-2]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생활임금(4개의 안) ····· 53

PICTURES

그림차례

[그림 2-1] 2023년 생활임금 현황: 전국 광역자치단체 ····· 14
[그림 2-2] 2023년 생활임금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 15
[그림 2-3]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임금 분포(좌) 및 시군 생활임금 격차 추이(우) ····· 18
[그림 3-1] 2022년 31개 시군 주거비 분포(좌) 및 재정자립도(우) 분포 ····· 42
[그림 3-2] 2024년 31개 시군 생활임금(4안 기준) 산정안 분포 ····· 45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24년에 적용될 경기도 생활임금(안) 제시

○ '19년까지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만원 달성을 목표로 '16년부터 매년 12.5%씩 3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음. 그 결과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하였음

○ '23년에는 경기도 근로자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은 11,485원으로 결정됨. '24년에도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합리적 생활임금액 산정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생활임금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경제적 특성에 기반하여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안)을 제시

○ '24년 기준, 31개 시군의 생활임금도 매년 변화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도출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도출된 시군의 생활임금안은 각 시군에서 결정할 생활임금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에의 확산 방향 제시

○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공공적 특성이 강한 민간부문부터 생활임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2024년 경기도와 31개 시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안을 제시하며 또한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방안을 제시

○ 본 연구는 최저임금, 중위소득, 가계지출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기준안을 제시하며 민간부문으로의 생활임금 확산방향도 강구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주요 연구내용

○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및 특성
- 경기도 생활임금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근로소득 구조 분석
- 경기도 생활임금 특성

○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제시
-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제시
- 정책건의: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표 1-1] 과제 추진계획

구분	2023년 추진계획(안)					
	5	6	7	8	9	10
□ 과업의 내용						
• 선행연구 검토 등						
• 생활임금 현황 및 추진 과제						
- 경기도 생활임금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근로소득 구조 분석						
- 경기도 생활임금 특성						
•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제시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제시						
- 2024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안 제시						
• 결론 및 정책제언						
- 요약 및 결론						
-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2024년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론

○ 경기도의 3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지출, 가계소득, 근로자소득, 전년 생활임금 등의 4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각각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을 통하여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안을 제시

- 2024년 생활임금 산정안: 3인 가구 가계지출,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3인 가구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고려하여 2024년 생활임금 산정

○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차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1개 시군의 생활임금과 상관관계가 높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주거비 변수를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산입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안)을 제시

-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공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는 2023년의 생활임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함. 그러나 본 연구는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본 연구는 2024년 기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산정안을 제시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2023년 생활임금제 산정 모형 수립 • 연구자: 강영훈(2022) • 연구목적: 최저임금, 중위소득, 가계지출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2023년에 적용할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액을 제시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국내외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 및 사례조사 • 최저임금, 중위소득, 가계지출 등에 기반한 사례별 2023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액 제시 • 울산지역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와 확산 방안
	2	• 과제명: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완역할 계속하되 산정방식 합리화하고 영향력 확대 필요(이슈 페이퍼) • 연구자: 김진하 외(2021) • 연구목적: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 검토 및 향후 운영 방향 제시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 검토 • 국내외, 생활임금 검토분석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118% • 서울시 생활임금, 향후 운영방향 3대 해법 제시
	3	• 과제명: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향후 추진방향 • 연구자: 김군수 외(2022) • 연구목적: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액 제시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전문가 토론회 • 통계적 모형 활용	• 생활임금 현황 및 특성 • 생활임금 사례분석 • 2022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액 제시 •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및 제도개선 •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		• 과제명: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 연구목적: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안을 제시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산정안을 제시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전문가 토론회 • 통계적 모형 활용	• 생활임금 현황 및 특성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방법 개발 • 시나리오별 생활임금 적용방안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기준안 적용 • 정책건의
		차별성		
		• 기존 연구는 2023년의 생활임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함. 그러나 본 연구는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2024년 기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기준안과 산정안을 제시		

02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및 특성

1.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2. 경기도 생활임금 특성

제2장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및 특성

1 경기도 생활임금 개요

1) 생활임금 정의와 적용 대상[1)]

❑ 생활임금의 정의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뜻함

❑ 경기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 경기도 소속 노동자(공무원 제외)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경기도에 간접고용(위탁고용)된 근로자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서는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거나 혹은 도에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중 도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를 포함
- 다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와 같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과 결정 과정

❑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4조)

○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내부자료(2023년)"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각종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 민간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등

❑ 경기도 생활임금의 결정 과정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

❑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를 대상으로 정기 및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및 도급 금액을 뜻함

2 경기도 생활임금 특성

1) 생활임금 변화추이

❑ '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485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9.4%p 높은 수준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시급 11,485원이며 최저임금 대비 19.4% 높은 수준

- '23년 생활임금 시급 11,485원은 월급액으로 환산 시 2,400,365원임
-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약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

[표 2-1] 경기도 생활임금 추이

(단위: 원, %)

연도	전년도 생활임금(원)	인상률(%)	월급액(원)	시급환산 (209시간, 원)	최저임금 대비(%)
2019년	1,860,100	12.4	2,090,000	10,000	19.8↑
2020년	2,090,000	3.6	2,166,076	10,364	20.7↑
2021년	2,166,076	1.7	2,202,860	10,540	20.9↑
2022년	2,202,860	5.7	2,328,469	11,141	21.6↑
2023년	2,328,469	3.1	2,400,365	11,485	19.4↑

자료: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각 연도).

❑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2)]

○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공계약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계약체결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는 '19년 3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경기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기업의 관련 신규 채용자에게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에서 책정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임

2) 경기도 노동정책과 내부자료(2023년).

-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는 ’20년 8월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하도록 함

[표 2-2]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도 평가기준 관련 공고 개정내용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 직원 고용 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 2점

자료: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공고 제2023-32호(2023.5.26.).

❍ 경기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하여 첫째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기업과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음

❍ 생활임금 서약제에 참여한 기업은 ’17년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신청기업은 57개사이고 서약제를 유지한 기업은 44개사임

❍ 또한 ’22년 9월 30일 현재, 생활임금 관련 가점을 부여받은 기업은 총 95개사에 이름

[표 2-3] 생활임금 서약제 참여기업 현황

(2023.6.30.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기업	57	6	2	2	6	16	22	3
유지기업	44	-	-	-	5	14	22	3

주: 미유지 사유는 폐업, 중도포기, 미준수 등.
자료: 경기도 노동정책과.

[표 2-4] 생활임금 관련 가점 부여 현황

(2022.9.30.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道 기업 인증사업		공공계약(일반용역)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1점)	착한기업 (3점)	생활임금 지급 확약 기업 (신규1명당 0.2점)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 제출기업 (2점)
가점 기업	95	5	-	90	-

자료: 경기도 노동정책과.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과 수혜 인원

○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 인원은 2022년 3,068명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은 11,405명, 수혜 인원은 3,068명으로 수혜 비율(수혜 인원/적용 대상 인원)은 26.9%임
- 생활임금이 매년 소폭이나마 상승하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과 수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5]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인원 및 수혜 인원

(단위: 명,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용 대상(a)	7,926	9,908	10,825	11,405
수혜 인원(b)	2,153	2,276	2,985	3,068
지자체(도·시·군)	1,580	1,541	2,115	2,246
출자·출연	573	735	870	822
수혜 비율(b/a)	27.2%	23.0%	27.6%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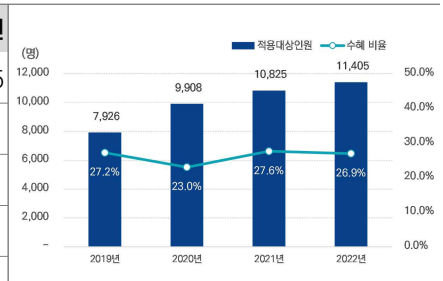

주: 1) 출자출연 기간제 항목에 유기계약직, 시간제 포함.
2) 실태조사(매년 하반기 실시) 자료 기반으로 연말(12.31.) 기준 인원과는 차이 있음.
자료: 경기도 노동정책과.

2)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비교

❑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비교

○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약 20% 상회하는 수준으로, '23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19.4% 높게 나타남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모두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40시간 및 주 1일 휴일 8시간을 포함, 한 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표 2-6] 연도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비교

(단위: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원/시간)	→ 10.9% 인상 8,350 (월1,745,150)	→ 2.87% 인상 8,590 (월1,795,310)	→ 1.5% 인상 8,720 (월1,822,480)	→ 5.05% 인상 9,160 (월1,914,440)	→ 5.0% 인상 9,620 (월2,010,580)
생활임금 (원/시간)	→ 12.4% 인상 10,000 (월2,090,000)	→ 3.6% 인상 10,364 (월2,166,076)	→ 1.7% 인상 10,540 (월2,202,860)	→ 5.7% 인상 11,141 (월2,328,469)	→ 3.1% 인상 11,485 (월2,400,365)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수준	119.8%	120.7%	120.9%	121.6%	119.4%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경기도 노동정책과.

❑ 경기도와 타 지자체별 생활임금 비교

○ (광역지방자치단체) '23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이 11,93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6개 광역지방단체 중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

[그림 2-1] 2023년 생활임금 현황: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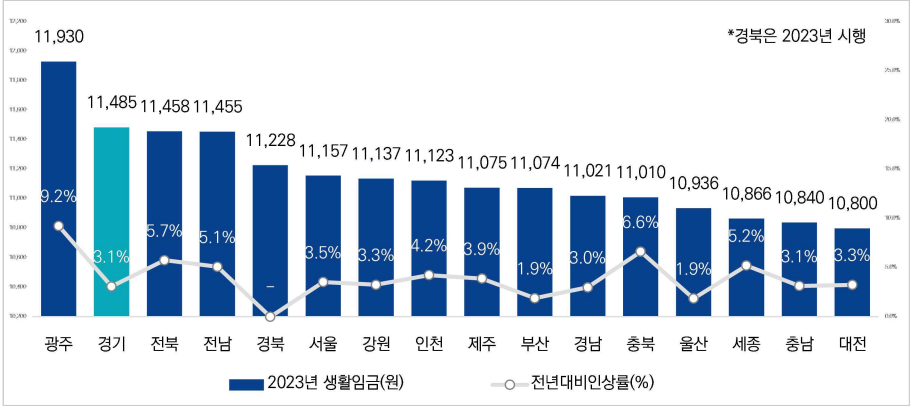

[표 2-7] 2023년 생활임금 현황: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 원, %)

시도	2022년	2023년	인상률(%)	시도	2022년	2023년	인상률(%)
광주	10,920	11,930	9.2%	제주	10,660	11,075	3.9%
경기	11,141	11,485	3.1%	부산	10,868	11,074	1.9%
전북	10,835	11,458	5.7%	경남	10,700	11,021	3.0%
전남	10,900	11,455	5.1%	충북	10,326	11,010	6.6%
경북	-	11,228	-	울산	10,737	10,936	1.9%
서울	10,776	11,157	3.5%	세종	10,328	10,866	5.2%
강원	10,785	11,137	3.3%	충남	10,510	10,840	3.1%
인천	10,670	11,123	4.2%	대전	10,460	10,800	3.3%

주: 경북은 2023년부터 시행, 생활임금제도 미시행 시·도(1): 대구(2024년 시행 목표).
자료: 각 지자체 생활임금 고시자료.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23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의 생활임금이 11,730원으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는 10,070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2-2] 2023년 생활임금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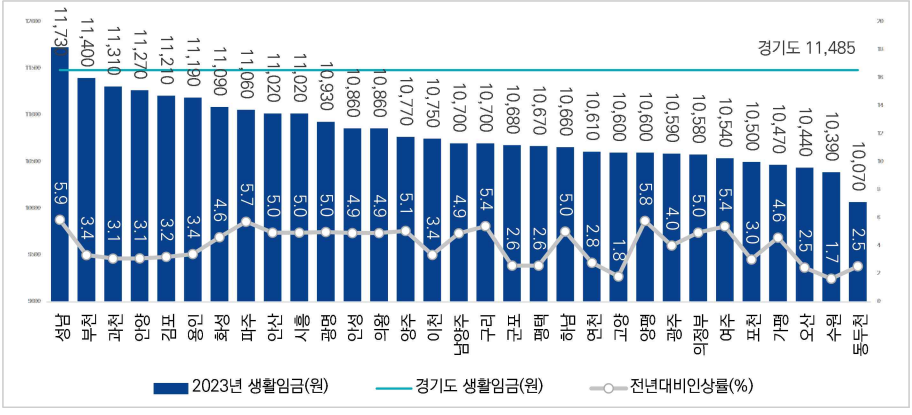

[표 2-8] 2023년 생활임금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단위: 원, %)

시도	2022년	2023년	인상률(%)	시도	2022년	2023년	인상률(%)
성남시	11,080	11,730	5.9	구리시	10,150	10,700	5.4
부천시	11,030	11,400	3.4	군포시	10,410	10,680	2.6
과천시	10,970	11,310	3.1	평택시	10,400	10,670	2.6
안양시	10,930	11,270	3.1	하남시	10,150	10,660	5.0
김포시	10,860	11,210	3.2	연천군	10,320	10,610	2.8
용인시	10,820	11,190	3.4	고양시	10,410	10,600	1.8
화성시	10,600	11,090	4.6	양평군	10,020	10,600	5.8
파주시	10,460	11,060	5.7	광주시	10,180	10,590	4.0
안산시	10,500	11,020	5.0	의정부시	10,080	10,580	5.0
시흥시	10,500	11,020	5.0	여주시	10,000	10,540	5.4
광명시	10,410	10,930	5.0	포천시	10,190	10,500	3.0
안성시	10,350	10,860	4.9	가평군	10,010	10,470	4.6
의왕시	10,350	10,860	4.9	오산시	10,190	10,440	2.5
양주시	10,250	10,770	5.1	수원시	10,220	10,390	1.7
이천시	10,400	10,750	3.4	동두천시	9,820	10,070	2.5
남양주시	10,200	10,700	4.9				

자료: 경기도 노동정책과 내부자료.

3)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격차

❑ 31개 시군 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비교

○ 경기도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로 경기도 소속 근로자(공무원 제외),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경기도에 간접고용(위탁고용)된 근로자로 한정

○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용인시 외 15개 지역은 적용 대상이 시군과 출자·출연의 직접고용 근로자이고, 수원시외 기타 지역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시군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시군에 간접고용(위탁고용) 된 민간위탁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우임

- 예외로 안산시는 외주화[3]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동두천시는 시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표 2-9]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번호	시군	적용 대상
1	수원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2	고양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3	용인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4	성남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5	부천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출자출연(직접고용)
6	안산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외주), 출자출연(직접고용)
7	화성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출자출연(직접고용)
8	남양주시[1)]	시 직접고용,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
9	안양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출자출연(직접고용)
10	평택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11	의정부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12	파주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13	시흥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14	김포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15	광명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출자출연(직접고용)
16	광주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17	군포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출자출연(직접고용)
18	이천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19	오산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0	하남시	시(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21	양주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2	구리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3	안성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4	포천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5	의왕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6	여주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27	양평군	군(직접고용, 민간위탁, 용역), 출자출연(직접고용)
28	동두천시	시 직접고용
29	과천시	시, 출자출연 직접고용
30	가평군	군, 출자출연 직접고용
31	연천군	군, 출자출연 직접고용

주: 1) 남양주시는 지방공사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남양주시복지재단이 있음.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기도 각 시군 생활임금 조례" 재정리(2023.9.25. 검색).; 남양주시. "2023년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3) 외주화란 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 31개 시군 간 생활임금 격차

○ '23년 기준, 31개 시군 간 최대-최소 생활임금의 격차는 1,660원으로 나타남. 이는 '22년의 최대-최소 격차 1,260원보다 높게 나타나 격차가 더욱 확대

- 31개 시군 생활임금액: (2022년) 최대 성남시 11,080원, 최소 동두천시 9,820원
  (2023년) 최대 성남시 11,730원, 최소 동두천시 10,070원

○ '23년 기준, 광역지자체 간 최대-최소 생활임금의 격차는 1,130원으로 나타남. 이는 '22년의 최대-최소 격차 815원보다 높게 나타나 격차가 더욱 확대

-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2022년) 최대 경기도 11,141원, 최소 충북 10,326원
  (2023년) 최대 광주시 11,930원, 최소 충북 10,800원

[그림 2-3]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임금 분포(좌) 및 시군 생활임금 격차 추이(우)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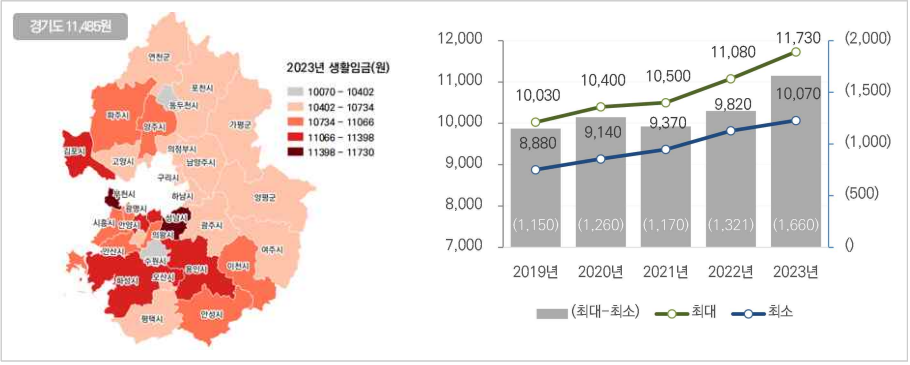

❑ 시군 지역 통계 부재로 시군 생활임금의 산정에 한계

○ 경기도 생활임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기타기준(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단순 적용) 4가지 모형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있고, 각 기준안에서도 여러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산정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의 공표 범위가 전국 단위인 경우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임

- 전국 단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지출항목별 구성 값을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전월세 거래액), 통계청(사교육비),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여가활동조사)의 자료를 활용하고, 경기도 가계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통계청(경상소득) 자료를 활용

❍ 현재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초 자료 중 시군 단위로 공표되는 것은 9개 통계조사중 국토교통부(전월세 거래액) 자료뿐이어서, 시군의 경제 특성에 기반한 생활임금을 산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표 2-10]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초 자료 현황

통계조사명	이용자료명	공표 범위	발표 주기	조사(발표)기관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지출(분기, 연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1)	물가상승률	시도	월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 및 근로시간	시도	연간(4월 기준)	고용노동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사교육비	시도	연간	통계청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월세 거래액	읍면동	일별	국토교통부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전국	연간	보건복지부
국민여가활동조사	평균 여가비	시도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시도	연간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	시도2)	월간	한국부동산원

주: 1)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지역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전국 40개 주요 시(도)를 선정, 경기도 시군은 9개 지역(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고양, 안산, 용인, 화성)이 해당.
2)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전체 261개 시군구 중 아파트 거래량과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87개 시군구 공표하고 있으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만 시군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을 공표하고 있음(경기도 미공표 시군(4) - 가평, 양평, 여주, 연천).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한국부동산원.

03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1.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2.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과 2024년 생활임금 산정안
3.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

제3장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산정안

1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1) 기본 전제

❑ 생활임금 산정기준: 4가지 유형

○ 생활임금 도출은 가계지출과 가계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들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됨.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기준과 작년 생활임금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기준을 설정함

- 가계지출기준
- 가계소득기준
- 근로소득기준
- 근로자 임금 증가율을 고려한 생활임금 기준

❑ 기본적 가계 구성: 3인 가구를 기준

○ 실제로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가계구성인이 3인 이하이지만, 본 보고서에서 기본적 가계구성을 3인 가구로 가정한 것은 영국과 서울시 사례를 참고로 하여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기본 가계 구성은 3인 가구로, 맞벌이 부부 성인 2인, 미성년 자녀 1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전일제 근로, 다른 1인은 시간제 근로, 미성년 자녀 1인은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가정
-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9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56시간
- 전일제 근로자는 1주일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 한 달로는 209시간을 근로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1일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 6시간을 포함하여 총 36시간, 한 달 156시간을 근로함. 즉, 맞벌이 부부의 한 달 총근로시간은 365시간임

❑ 상대빈곤 기준선은 가계소득 중윗값 혹은 월평균 가계지출[4]의 60%로 설정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 기준선 개념의 3인 가구 소득액 혹은 지출액의 최소 수준을 평균값 혹은 중윗값의 60% 수준으로 설정

- 최저생계비는 가구 소득액 또는 지출액의 중윗값의 50%선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시가 2020년 이후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3인 가구 지출액 중위값의 60%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영국도 상대빈곤기준선을 중위소득의 60% 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름

○ 가계소득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므로, 경기도 3인 가구 가계소득은 전국 3인 가구 가계소득액 혹은 지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 가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중윗값 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여 고시하고 있음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산출 통계 자료원으로 하여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표 3-1]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2022.7.29.).

❑ 생활임금 산정에 활용되는 가계소득, 가계지출, 근로소득 통계치를 2024년 기준으로 적정화

○ 가계지출과 근로소득 자료의 경우 2022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계소득 자료의 경우 2023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를 2024년 기준으로 적정화

4)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이 개편됨에 따라(통계청 고시 제2018-531호) '19년 기준 이후 가계지출 자료는 평균값으로 이를 상대빈곤 기준선으로 설정함.

○ 즉, 가계지출('22년)·근로소득('22년)·가계소득('23년)을 전년도 증가율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으로 적정화

- 2022년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0%
- 2022년 근로자(5인 이상) 평균임금 증가율(사업체노동력조사): 4.9%
- 2022년 근로자(3인 가구) 가계지출증가율(가계동향조사): 3.3%

❑ 생활임금 산정 시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및 문화여가비 가산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가계소득, 가계지출, 근로소득 기준을 일부 보정하여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및 문화여가비 일부를 모형에 가산함

-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생활임금도 가구 단위의 최저생계비에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에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 통신비의 일부를 가산한 배경은, 생활임금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실질적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였기 때문임

2) 최소한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비 재산정

❑ 최소한의 주거면적 기준

○ 경기도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서울시와 같이 3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43㎡를 기준으로 함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은 보장되어야 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각각 36㎡, 43㎡임. 서울시는 3인 가구의 최소한의 주거비를 처음에는 36㎡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지만, 최근에는 43㎡를 기준을 삼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경기도 3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43㎡를 전제로 함.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 개념의 3인 가구 지출액의 최소치를 원래 가계지출액 중윗값의 50%에서 60%로 20%나 상승시켰기 때문에 최소 주거면적도 36㎡에서 20% 인상하면 약 43㎡가 되기 때문임

❑ 최소한의 주거비 재산정

○ 국토교통부의 경기도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비를 산정하였으며, 3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인 43㎡에 해당하는 주거비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추정하였음

- 2022년 경기도 주거면적 43㎡ 기준 추정 주거비: 월 636,959원[5)]
- 가계지출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할 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는 주거비(평균값)가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거면적 43㎡의 주거비(평균값)로 대체함
- 근로소득기준과 가계소득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할 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거면적 43㎡의 주거비(평균값)의 60%를 반영시킴

3) 사교육비를 반영한 교육비 재산정

❑ 생활임금 산정기준: 가계지출기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발표된 사교육비 액수와 교육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발표된 사교육비 액수를 비교해볼 때 교육청 조사에 발표된 사교육비 액수가 더 크므로, 과소평가된 사교육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해당 차이만큼의 사교육비를 생활임금 모형에 반영

- 2022년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3인 가구 교육비 지출액: 273,039원(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포함. 전국 사교육비는 172,120원)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2022년 경기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46,250원
- 구체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평균값)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한 사교육비(평균값)를 뺀 금액의 60% 수준(본 연구에서의 상대적 빈곤기준선 개념)을 추가로 반영한 것을 3인 가구 최소한도의 사교육비라고 설정함

---

5) 2022년 경기도 추정 주거비(43㎡)는 636,959원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전용면적(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42.5㎡ 이상 43.5㎡ 미만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해당 면적의 경기도 총계약(전용)면적은 243,011㎡, 보증금 총액은 53,599,825만원, 월세는 131,893만원임.
*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2022년 단순 월평균 2.1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4.13%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전월세전환율의 단순 월평균 6.1%의 평균인 5.1%를 적용함.

❑ 생활임금 산정기준: 근로소득기준과 가계소득기준

○ 근로소득과 가계소득을 생활임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산정모형내에서 산입되는 교육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2년 기준) 근로자 3인 가구 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60%를 추가로 반영함

4) 문화여가비와 교통비 재산정

❑ 생활임금 산정기준: 가계지출기준

○ 경기도 생활임금 중 문화여가비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

- 2021년 기준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분야 월평균 지출규모: 1인당 145,000원(3명당 435,000원)

○ 원래 2022년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3인 가구 문화여가비 208,469원을 활용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의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인 가구 문화여가비를 435,000원으로 대체하고 그 60% 수준을 생활임금 산정에 반영하였음

- 3인 가구 문화여가비 435,000원의 60% 수준은 본 연구에서 정하는 상대빈곤 기준선 개념에 따른 것임

○ 반면에 근로자 3인 가구 교통비는 2022년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3인 가구 교통비 480,099원을 모형에 적용함

❑ 생활임금 산정기준: 근로소득기준과 가계소득기준

○ 근로소득과 가계소득을 생활임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문화여가비 및 교통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근로자 3인 가구 문화여가비 및 교통비 지출액 규모의 60%를 모형에 적용하였음

5) 요약

❑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 전제

○ 생활임금 산정기준: 4가지 유형

- 근로소득기준
- 가계소득기준
- 가계지출기준
- 전년도 생활임금('23년 생활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 가계 구성원 3인: 서울시와 영국사례를 적용

- 가계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와 미성년 자녀 1명의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부부의 근로시간은 총 365시간임(3인 가구 맞벌이 기준: 근로시간 365시간 = 전일제 209시간+시간제 156시간)

○ 상대빈곤 기준선: 서울시와 영국사례를 적용

- 가계소득의 중윗값, 월평균 가계지출의 60% 수준을 상대빈곤 기준선으로 설정

○ '22년도 가계지출과 '22년도 근로소득, '23년도 가계소득을 2024년 기준으로 적정화

- '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0%
- '22년 근로자(5인 이상) 평균임금 증가율(사업체노동력조사): 4.9%
- '22년 근로자(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증가율(가계동향조사): 3.3%

○ 실질적인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여가비 및 교통비 등을 가산

- '22년 경기도 43㎡(3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 추정 주거비: 월 636,959원
- '22년 근로자 3인 가구 교육비 지출: 273,039원(가계지출기준인 경우, 교육청 사교육비로 대체)
- '22년 근로자 3인 가구 오락·문화비 지출: 208,469원(가계지출기준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비로 대체)
- '22년 근로자 3인 가구 교통비 지출: 480,099원
- '22년 근로자 3인 가구 통신서비스 지출: 135,509원

❑ 산정기준별 생활임금 산정방법

[표 3-2] 산정기준별 생활임금 산정방법

구 분	①가계지출기준	②근로소득기준	③가계소득기준	④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 준	3인 가구 가계지출기준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근로소득 기준	3인 가구 가계소득기준	'23년 경기도 생활임금에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곱한 기준 → 12,046원 = 11,485원×(1+4.9%)
상대빈곤 기준선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지출 평균값 60%의 시급	경기도 상용과 비상용근로자 평균시급의 60%	경기도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의 시급	
조정1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 통신비 조정			
조정2	- (지출부분) '22년 근로자(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증가율(3.3%) - (소득부분) '22년 근로자(5인 이상) 평균임금 증가율(4.9%) - '22년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0%) 반영			

2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과 2024년 생활임금 산정안

1) 가계지출기준

❑ 기본 전제

○ 영국, 미국, 서울시 등에서는 생활임금 산정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의 가계지출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에도 가구 단위의 가계지출 기준을 활용함

- 가계지출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발표된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자료를 활용함

○ 상대빈곤 기준선은 전국 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의 60%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보통 상대빈곤 기준선[6]은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0% 선에서 설정하나, 생활임금이 목표로 하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60%로 설정함

○ 생활임금에는 근로자 3인 가구의 최소한의 주거공간 43㎡에 대한 주거비, 자녀 사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였으며 경기도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였음

❑ 가계지출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7]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1단계에서는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60% 수준에서 상대빈곤 기준선을 설정함

-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A): 4,779,885원
- 상대빈곤 기준선: A×60% = 2,867,931원(월기준)

○ 2단계에서는 생활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주거비(주거공간 43㎡), 자녀 사교육비, 문화여가비

---

6)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중위소득의 50%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해당 수준에 미달할 경우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절대적 빈곤층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는 가구를 의미함.

7)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빈곤기준선을 다소 강화하여(2022년도 서울시 59.5%, 본 연구에서의 경기도 60%),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여가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였음.

및 교통비를 가산함

- 현실적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A)의 개별 항목에서 실제주거비, 학생학원교육비, 오락·문화비 항목을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주거비, 사교육비, 문화여가비로 대체하여 산정하였음
- 이렇게 대체된 사교육비와 문화여가비의 경우 상대빈곤 기준선 비율인 60%를 반영하였으며, 주거비의 경우 최소한의 주거공간 43㎡에 대한 전월세를 100%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즉, 주거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전월세 평균값을 100% 반영하였음
- 교통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으로 설정된 비율인 월평균 가계지출의 60%만 반영하였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지출항목이므로 월평균 지출액의 100%를 전부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나머지 40%를 추가로 반영하였음

○ 3단계에서는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증가율 3.3%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5.0%를 가산하여 생활임금을 적정화함

❑ 가계지출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방법

[표 3-3] 가계지출기준,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 통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 항목〉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A)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실제주거비(B)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학생학원교육비(C)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오락·문화비(D)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교통비(F)
2022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통신서비스(J)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한 가계지출 대체 항목〉

2022년 경기도 43㎡ 기준 추정 주거비(G):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2년 경기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H):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1년 경기도 3인 문화여가비(I):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1단계에서는 2022년도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재조정함

- 전국 근로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금액에서 실제주거비(B), 학생학원교육비(C), 오락문화비(D)를 제외한 금액(E)

  1안 및 4안: (A)-(B)-(C)

  2안 및 3안: (A)-(B)-(C)-(D)

1안: 상대빈곤 기준선+주거비, 교육비 반영
2안: (1안) + 문화여가비 추가 반영
3안: (2안) + 교통비 추가 반영
4안: (3안) + 통신비 추가 반영, 문화여가비 제외(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안)

❍ 2단계에서는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상대빈곤 기준선 60% 수준에 최소 수준의 주거비(주거공간 43㎡), 문화여가비, 교통비를 가산한 후, 3인 가구의 총 근로시간인 365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함

- 이때, 교통비의 경우 필수적 지출임을 고려해 월평균 지출액의 60%가 아닌 100%를 전부 반영함
- 월평균 가계지출의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도출식은 다음과 같음

  1안: [((E)+(H))×60%+(G)]÷365

  2안: [((E)+(H)+(I))×60%+(G)]÷365

  3안: [((E)+(H)+(I))×60%+(G)+(F)×40%]÷365

  4안: [((E)+(H))×60%+(G)+(J)×10%+(F)×40%]÷365

❍ 3단계에서는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증가율과 경기도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3인 가구 총 근로시간 365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출함

-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증가율 및 경기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1안: [((E)+(H))×60%+(G)]×(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2안: [((E)+(H)+(I))×60%+(G)]×(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3안: [((E)+(H)+(I))×60%+(G)+(F)×40%]×(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4안: [((E)+(H))×60%+(G)+(J)×10%+(F)×40%]×(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 가계지출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의 상대빈곤 기준선(60%)+최소주거비+자녀 사교육비+문화여가비+교통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한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743원임

- 한편,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상대빈곤 기준선(60%)+최소주거비+자녀 사교육비만을 고려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0,769원이 되며, 이 금액에 문화여가비를 반영하면 시간당 11,173원이 됨
- 2020년도(제5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조정안인 4안의 경우 3안에 통신비를 반영하고 문화여가비를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하면 11,380원이 됨(참고로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3안과 4안의 평균에 근접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

[표 3-4]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가계지출기준

1안: 기본 (실질 주거비 100%, 실질 사교육비 60% 반영)	2안: 1안+실질 문화여가비 반영	3안: 2안+교통비 추가 반영	4안: 3안+통신비 10% 반영 - 실질 문화여가비 제외
10,769원	11,173원	11,743원	11,380원
	1안 대비 404원 증가	1안 대비 974원 증가	1안 대비 611원 증가

2) 근로소득기준

❑ 기본전제

○ 근로소득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최저생계비 수준의 근로소득을 도출해야 함. 2022년도에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시된 상용근로자 및 비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를 각 노동자의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이 값에 임금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을 보정하여 도출된 금액에 상대빈곤 기준선 60%를 곱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함

○ 위와 같이 도출된 최저생계비 수준의 근로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이기 때문에, 상기 금액에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비, 자녀 사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임금의 형태로 추가 보전하는 것을 전제함

❑ 근로소득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 근로소득기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1단계에는 전국과 경기도의 상용 및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액을 산정함

- 전국 상용근로자(5인 이상) 월평균 정액급여(A): 3,519,989원
- 경기도 상용근로자(5인 이상) 월평균 정액급여(B): 3,500,180원
- 전국 비상용근로자(5인 이상) 월평균 정액급여(C): 1,978,135원
- 경기도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 1,967,003원

  (A):(C) = (B):(D) → (D) = (B)×(C)÷(A)

※ 경기도의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전국 및 경기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비율 적용

○ 2단계에서는 경기도 근로자의 상대빈곤 기준선 수준의 급여를 산출함[8)]

- 경기도 상용근로자 시급(E): 18,447원 = (B)×(1+4.9%)×(1+5.0%)÷209시간
  (상용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눔)
- 경기도 비상용근로자 시급(F): 13,888원 = (D)×(1+4.9%)×(1+5.0%)÷156시간
  (비상용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인 156시간으로 나눔)

※ 평균임금 증가율(4.9%)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5.0%) 반영

- 경기도 근로자 평균 시급의 60% 수준이 상대빈곤 기준선 해당(G): 9,700원

  (G) = ((E)+(F))×1/2×60%

○ 3단계에서는 생활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주거비, 자녀 사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의 일부(상대빈곤 기준선 수준의 60%)를 추가로 반영함

[표 3-5] 생활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추가로 반영되는 가계지출 항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사 값〉
2022년 경기도 43㎡ 기준 추정 주거비(H)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 항목별 값〉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교육비(I)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오락·문화비(J)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교통비(K)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통신서비스비(O)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8) 상용 및 비상용 근로소득은 중윗값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치로 반영함.

- 2022년도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증가율과 경기도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3인 가구의 월총근로시간인 365시간으로 나눔
-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증가율과 경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다음과 도출됨

1안: (G)+[((H)+(I))×60%×(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2안: (G)+[((H)+(I)+(J))×60%×(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3안: (G)+[((H)+(I)+(J)+(K))×60%×(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4안: (G)+[{(((H)+(I)+(K))×60%)+((O)×20%)}×(1+가계지출 증가율)×(1+경기도 물가상승률)]÷365

❑ 근로소득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상용근로자 및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상대빈곤 기준선인 60%에 최소 주거비+자녀 사교육비+문화여가비+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2,551원이 됨

- 한편, 상용근로자 및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상대빈곤 기준선(60%)에 주거비와 교육비만을 고려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323원이 되고, 여기에 문화여가비를 반영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695원이 됨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안인 4안은 3안에 통신비를 반영하고 오락·문화비를 제외하면 12,259원이 됨

[표 3-6]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근로소득기준

1안: 기본 (실질 주거비 100%, 실질 사교육비 60% 반영)	2안: 1안+문화여가비 60% 반영	3안: 2안+교통비 60% 반영	4안: 3안+통신비 20% 반영 - 문화여가비 제외
11,323원	11,695원	12,551원	12,259원
	1안대비 372원 증가	1안대비 1,228원 증가	1안대비 936원 증가

1안: 상대빈곤 기준선 + 주거비, 교육비 반영
2안: (1안) + 문화여가비 추가 반영
3안: (2안) + 교통비 추가 반영
4안: (3안) + 통신비 추가 반영, 문화여가비 제외(제5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안)

3) 가계소득기준

❑ 기본전제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을 산출

- 2023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A): 4,434,816원(월기준)

○ 경기도 2023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B) 도출

- 경기도 근로자 3인 가구 중위소득 자료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의 경기도 근로소득을 전국 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근로자 3인 가구 중위소득을 도출함
- 2021년 전국 대비 경기도 가계소득수준(A): 116.1%
- 2023년 경기도 3인 가구 중위소득(B): A×116.1%
- 위 값에 상대빈곤 기준선 60%를 곱해서 도출된 금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의 3인 가구 가계소득으로 봄

❑ 가계소득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 1단계에서는 먼저 경기도 근로자 3인 가구의 중위소득 및 상대빈곤 기준선을 적용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도출함

- 2023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A): 4,434,816원(월기준)
- 2021년 전국 대비 경기도 가계소득수준(B): 116.1%
- 2023년 경기도 3인 가구 중위소득: (A)×(B) = 5,149,491원
- 상대빈곤 기준선 60%를 적용하면 경기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3인 가구소득이 도출
  경기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3인 가구소득: (A)×(B)×60% = 3,089,695원(월기준)
- 2023년 기준 경기도 3인 가구 중위소득 60%를 적용한 시급(C): 8,878원
  (C) = (A)×(B)×60%×(1+4.9%)÷365
  ※ 전국 대비 경기도 근로소득수준(116.1%)과 평균임금 증가율(4.9%) 반영

○ 2단계에서는 현실적 수준의 생활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주거비, 자녀 사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의 일부(상대빈곤 기준선과 동일한 60% 수준)를 추가로 반영함

[표 3-7] 생활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추가로 반영되는 가계지출 항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사 값〉 2022년 경기도 43㎡ 기준 추정 주거비(D)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 항목별 값〉**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교육비(E)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오락·문화비(F)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교통비(G)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통신서비스비(H)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또한,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증가율과 경기도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3인 가구의 총 근로시간 365시간으로 나눔
-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다음과 같음

1안: (C)+[((D)+(E))×60%×(1+가계지출 증가율)×(1+물가상승률)]÷365

2안: (C)+[((D)+(E)+(F))×60%×(1+가계지출 증가율)×(1+물가상승률)]÷365

3안: (C)+[((D)+(E)+(F)+(G))×60%×(1+가계지출 증가율)×(1+물가상승률)] ÷365

4안: (C)+[{(((D)+(E)+(G))×60%)+((H)×20%)}×(1+가계지출 증가율)×(1+물가상승률)]÷365

❑ 가계소득기준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경기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3인 가구소득(60%)+주거비+교육비+문화여가비+교통비 등을 전부 고려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728원이 됨

- 반면에 경기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3인 가구소득(60%)+주거비+교육비만을 고려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0,500원이 되고, 여기에 문화여가비를 반영하면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0,872원이 됨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안인 4안은 3안에 통신비를 반영하고 문화여가비를 제외하면 11,437원이 됨

[표 3-8]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가계소득기준

1안: 기본 (실질 주거비 100%, 실질 사교육비 60% 반영)	2안: 1안+문화여가비 60% 반영	3안: 2안+교통비 60% 반영	4안: 3안+통신비 20% 반영 - 문화여가비 제외
10,500원	10,872원	11,728원	11,437원
	1안대비 372원 증가	1안대비 1,228원 증가	1안대비 937원 증가

1안: 상대빈곤 기준선 + 주거비, 교육비 반영
2안: (1안) + 문화여가비 추가 반영
3안: (2안) + 교통비 추가 반영
4안: (3안) + 통신비 추가 반영, 문화여가비 제외(제5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안)

4) '22년 근로자 임금 증가율을 고려한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21년 대비 '22년 근로자(5인 이상) 평균임금 증가율인 4.9%를 적용한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방법

○ 근로자 임금 증가율을 고려하는 방식은 생활임금 산정에 근로자(5인 이상)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세부 산정방식은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인 11,485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5인 이상) 평균임금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임

- 해당 방식에 따르면 경기도의 '24년 생활임금은 '23년 경기도 생활임금(A)에 [1+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4.9%]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2,046원으로 산출됨

[표 3-9] '23년 생활임금×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공식

생활임금을 근로자(5인 이상) 평균임금 증가율과 연계시켜 도출하는 방식
→ 경기도 2023년 생활임금: 11,485원
→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 '23년 경기도 생활임금(A)×[1+(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4.9%)]

[표 3-10]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적용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적용
12,046원

5) 종합: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1안 평균: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추가하여 11,159원으로 산출**

○ 1안과 같이 상대빈곤 기준선에 최소한의 주거면적 확보가 가능한 주거비 및 교육비를 추가한 경우,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하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159원이 됨

❑ **2안 평균: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추가한 1안에 더하여, 문화여가비를 추가하여 11,446원으로 산출**

○ 2안에서는 1안의 상대빈곤 기준선에 최소 주거면적의 주거비, 교육비에 더하여 문화여가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하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446원이 됨

❑ **3안 평균: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여가비를 추가한 2안에 더하여, 교통비를 추가하여 12,017원으로 산출**

○ 3안에서는 2안의 상대빈곤 기준선에 최소 주거면적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에 더하여 교통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하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2,017원이 됨

❑ **4안 평균: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를 추가한 값에 통신비를 포함하여 11,780원으로 산출**

○ 4안의 경우 상대빈곤 기준선에 최소 주거면적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를 추가한 안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하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780원이 됨

- 4안은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기준안임

○ 4안을 토대로 한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780원으로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11,485원과 비교하면 2.6% 상승한 수준임

[표 3-1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최종안

구 분	가계지출 기준(a)	근로소득 기준(b)	가계소득 기준(c)	기타 기준(d)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평균 a~d)
1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추가)	10,769원	11,323원	10,500원	12,046원	11,159원
2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문화여가비 추가)	11,173원	11,695원	10,872원		11,446원
3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문화여가비+교통비 추가)	11,743원	12,551원	11,728원		12,017원
4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교통비+통신비 추가)	11,380원	12,259원	11,437원		11,780원

6)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4조의 ④항에서,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024년): 9,860원[9)]**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2023년 대비 2.5% 인상)

○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11,159원~12,017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대비 13.2~21.9% 높은 수준('23년에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19.4% 높은 수준)

❑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10)]: 일급 86,303원(제조부문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11,159원~12,017원이면 일급으로 환산하면 89,272원~96,136원이 되므로 단순노무종사원 일급에 비해 3.4~11.4% 높은 수준임

9)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2023.7.19.).

10)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2023.6.26.).

[표 3-12]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주요 직종	'23년 상반기 (a)	증감률(%)		'22년 하반기 (b)	'22년 상반기 (c)
		a/b	a/c		
단순노무종사원	86,303	2.0	2.4	84,618	84,303원
작업반장	125,583	3.7	3.9	121,072	120,898원
부품조립원	92,152	3.6	4.3	88,920	88,369원

자료: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2023.6.2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각종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이나,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60%를 기준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OECD 등의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10%p 높은 영국의 임금 가이드라인인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함

❑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관련 민간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 노동계(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24년 임금 인상 요구안[11]: 월급 기준 최저임금 2,508,000원 정부에 요구, 시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2,000원 수준으로 전년 최저임금 대비 약 24.7% 높은 수준임

○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안)이 11,159원~12,017원이면 월임금총액은 2,332,231원~2,511,553원이 될 것임. 이는 노동계 요구안 대비 -7.0~0.1% 수준에 해당함

11)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 제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2023.4.4.).

3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

1) 산정기준 및 방법

❑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를 적용하여 생활임금 산정

○ 시군단위에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적 통계를 구하기 어려움. 그나마 시군 단위의 통계를 구한다고 해도 대부분 생활임금과 연관성이 높지 않음

○ 그러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통계 중 생활임금과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주거비와 재정자립도임.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이 2개가 가장 적합[12)]

- 시군의 생활임금액과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주거비 등과의 상관분석 결과 재정자립도와 주거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2022년 31개 시군 주거비 분포(좌) 및 재정자립도(우) 분포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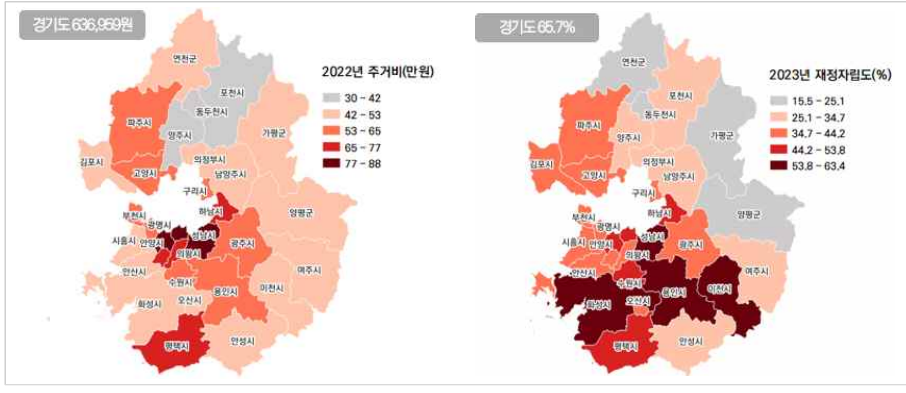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개편전기준)”.

❑ 시군의 생활임금은 시군의 주거비를 적용한 생활임금과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한 생활임금을 산정 후, 두 값의 평균을 구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에 산입하여 31개 시군의 최종 생활임금을 도출함

12) 김군수(2020).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모형 수립』, 경기연구원.

(1) 시군의 주거비를 고려한 생활임금의 산정 방법

❍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모형에 시군의 주거비와 2022년 생활임금액을 대입하여 산정 후 최소~최대 수준을 보정하여 산정함

①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모형에 시군별 주거비를 대입하여 산정

a_i =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서비스비가 반영된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기타기준의 평균값$(i=0,\cdots,31)$
a_0 = 경기도 주거비 적용된 경기도 생활임금,
$a_1 \cdots a_{31}$ = 31개 시군의 주거비 적용된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② 시군 주거비 적용된 생활임금$(a_{0,}\cdots,a_{31})$의 최소~최대 수준이 95~105가 되도록 스케일 조정

$$I_i=[95+((a_i-\min(a))\times(\frac{10}{\max(a)-\min(a)}))](i=0,\cdots,31\ ,95\leqq I\leqq 105)$$
I_o =주거비 적용된 경기도 생활임금 지수
$I_1 \cdots I_{31}$ =주거비 적용된 31개 시군 생활임금 지수

③ 주거비를 반영한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A_i=\frac{I_i\times a_0}{I_0},\ (i=0,\cdots,31)$$
$A_0=a_0$ =주거비 적용된 경기도 생활임금
A_i =주거비와 스케일 조정된 31개 시군 생활임금

(2)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생활임금의 산정 방법

❍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스케일 조정 후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액에 조정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

① 31개 시군 재정자립도$(f_0,\cdots,f_{31})$의 최소~최대 수준이 95~105가 되도록 스케일 조정

$$I_i = [95 + ((f_i - \min(f)) \times (\frac{10}{\max(f) - \min(f)}))] (i = 0, \cdots, 31 \ , 95 \leqq I \leqq 105)$$

I_o = 주거비 적용된 경기도 생활임금 지수

$I_1 \cdots I_{31}$ = 주거비 적용된 31개 시군 생활임금 지수

②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A_i = \frac{I_i \times a_0}{I_0}, (i = 0, \cdots, 31 \ , \ a_0 = \text{경기도 생활임금})$$

$A_0 = a_0$ = 경기도 생활임금

A_i = 스케일 조정된 재정자립도 반영된 31개 시군 생활임금

2) 31개 시군 생활임금 산정 결과

❑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4년 생활임금: 4안 기준

○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중 4안 기준으로,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인 주거비와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도출된 생활임금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기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은 성남시로 11,913원('23년 대비 1.6% 상승)이고, 가장 낮은 생활임금은 동두천시로 10,804원('23년 대비 7.3% 상승)으로 분석됨

○ 2023년 기준,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로 높은 지역과 최고로 낮은 지역(의 생활임금의 격차는 1,660원, 2024년 기준으로 그 격차는 1,109원으로 나타나 지역 간 생활임금의 격차는 다소 줄어듦

❑ 종합: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31개 시군 2024년 생활임금(4개의 안)

○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31개 시군 2023년 생활임금(4개의 안)은 다음 표와 같음

- 1안: (기본안) 상대빈곤 기준선 + 주거비, 교육비 반영
- 2안: (1안) + 문화여가비 추가 반영

- 3안: (2안) + 교통비 추가 반영
- 4안: (3안) + 통신비 추가 반영, 문화여가비 제외(제5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조정안)

❍ [표 3-14]의 4개의 안은 시군의 경제적, 재정적, 행정적 여건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허용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선정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24년 생활임금(4안 기준) 시군 격차 '23년 대비 551원 축소

- '24년 시군 생활임금 산정 결과, 성남시가 11,913원으로 가장 높고, 동두천시가 10,804원으로 가장 낮게 산정됨. 시군간 격차는 1,109원임
- '23년 시군 생활임금: 시군간 격차 1,660원

[그림 3-2] 2024년 31개 시군 생활임금(4안 기준) 산정안 분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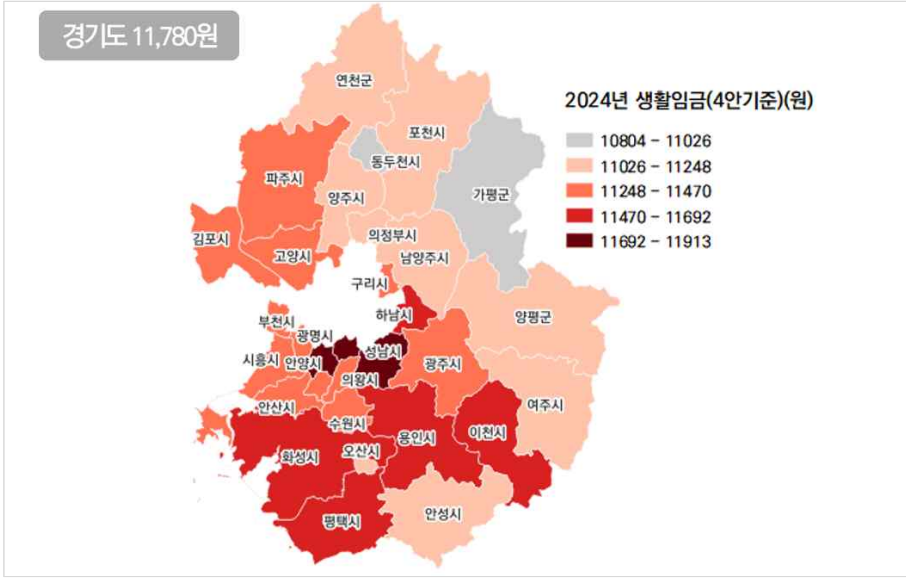

[표 3-13]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생활임금(4안 기준)

(단위: 원, %)

시군	2022년 주거비	2023년 재정자립도	2023년 생활임금		2024년 생활임금	
				(인상률)		(인상률)
경기도	636,959	65.7	11,485	(3.1%)	11,780	(2.6%)
가평군	455,802	20.7	10,470	(4.6%)	11,023	(5.3%)
고양시	636,220	37.6	10,600	(1.8%)	11,361	(7.2%)
과천시	882,418	53.1	11,310	(3.1%)	11,801	(4.3%)
광명시	628,928	42.0	10,930	(5.0%)	11,444	(4.7%)
광주시	536,468	39.4	10,590	(4.0%)	11,306	(6.8%)
구리시	573,185	36.6	10,700	(5.4%)	11,315	(5.7%)
군포시	685,881	35.2	10,680	(2.6%)	11,380	(6.6%)
김포시	484,086	41.4	11,210	(3.2%)	11,363	(1.4%)
남양주시	507,806	32.5	10,700	(4.9%)	11,221	(4.9%)
동두천시	302,973	15.5	10,070	(2.5%)	10,804	(7.3%)
부천시	622,957	34.8	11,400	(3.4%)	11,415	(0.1%)
성남시	812,107	63.4	11,730	(5.9%)	11,913	(1.6%)
수원시	545,923	52.4	10,390	(1.7%)	11,434	(10.1%)
시흥시	422,434	41.3	11,020	(5.0%)	11,294	(2.5%)
안산시	522,101	39.3	11,020	(5.0%)	11,345	(2.9%)
안성시	448,030	32.7	10,860	(4.9%)	11,197	(3.1%)
안양시	862,609	46.9	11,270	(3.1%)	11,712	(3.9%)
양주시	401,085	29.5	10,770	(5.1%)	11,116	(3.2%)
양평군	489,736	21.6	10,600	(5.8%)	11,073	(4.5%)
여주시	485,120	27.8	10,540	(5.4%)	11,132	(5.6%)
연천군	516,699	24.1	10,610	(2.8%)	11,123	(4.8%)
오산시	533,132	35.7	10,440	(2.5%)	11,244	(7.7%)
용인시	589,888	58.8	11,190	(3.4%)	11,633	(4.0%)
의왕시	692,250	40.3	10,860	(4.9%)	11,463	(5.6%)
의정부시	435,528	28.0	10,580	(5.0%)	11,102	(4.9%)
이천시	523,204	61.0	10,750	(3.4%)	11,556	(7.5%)
파주시	553,700	42.5	11,060	(5.7%)	11,409	(3.2%)
평택시	657,086	47.1	10,670	(2.6%)	11,491	(7.7%)
포천시	394,355	26.9	10,500	(3.0%)	11,050	(5.2%)
하남시	724,463	52.5	10,660	(5.0%)	11,600	(8.8%)
화성시	511,813	61.1	11,090	(4.6%)	11,589	(4.5%)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개편전 기준)”.

[표 3-14]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생활임금(4개의 안)

(단위: 원)

시군	1안: 기본	2안: 1안+문화여가비	3안: 2안+교통비	4안: 3안+통신비 -문화여가비 제외
경기도	11,159	11,446	12,017	11,780
가평군	10,442	10,710	11,244	11,023
고양시	10,762	11,038	11,589	11,361
과천시	11,178	11,466	12,037	11,801
광명시	10,840	11,119	11,673	11,444
광주시	10,710	10,985	11,533	11,306
구리시	10,718	10,994	11,542	11,315
군포시	10,780	11,057	11,609	11,380
김포시	10,764	11,041	11,591	11,363
남양주시	10,629	10,902	11,446	11,221
동두천시	10,235	10,498	11,021	10,804
부천시	10,813	11,091	11,644	11,415
성남시	11,285	11,575	12,153	11,913
수원시	10,832	11,110	11,664	11,434
시흥시	10,698	10,973	11,520	11,294
안산시	10,747	11,023	11,573	11,345
안성시	10,607	10,880	11,422	11,197
안양시	11,094	11,380	11,947	11,712
양주시	10,530	10,801	11,339	11,116
양평군	10,490	10,759	11,296	11,073
여주시	10,545	10,816	11,356	11,132
연천군	10,536	10,807	11,346	11,123
오산시	10,651	10,925	11,470	11,244
용인시	11,020	11,303	11,867	11,633
의왕시	10,859	11,138	11,693	11,463
의정부시	10,517	10,788	11,325	11,102
이천시	10,947	11,229	11,788	11,556
파주시	10,808	11,085	11,638	11,409
평택시	10,885	11,165	11,721	11,491
포천시	10,468	10,737	11,272	11,050
하남시	10,988	11,271	11,833	11,600
화성시	10,978	11,261	11,822	11,589

4

결론 및 정책제언

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2. 2024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안
3.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

❑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추가하여 11,159원으로 산출

○ 상대빈곤 기준선에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비와 교육비를 추가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해 보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159원이 됨

❑ 2안은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추가한 1안에 더하며, 문화여가비를 추가하여 11,446원으로 산출

○ 1안의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 교육비에 더하여 문화여가비를 추가한 경우,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해 보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446원이 됨

❑ 3안은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여가비를 더한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하여 12,017원으로 산출

○ 2안의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에 더하여 교통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해 보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2,017원이 됨

❑ 4안은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를 추가한 값에 통신비를 포함하여 11,780원으로 산출

○ 4안의 경우 상대빈곤 기준선에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그리고 통신비를 추가한 안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생활임금 금액의 평균치를 도출해 보면 '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780원이 됨

[표 4-1]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최종안

구 분	가계지출 기준(a)	근로소득 기준(b)	가계소득 기준(c)	기타 기준 (d)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평균 a~d)
1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추가)	10,769원	11,323원	10,500원	12,046원	11,159원
2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문화여가비 추가)	11,173원	11,695원	10,872원	12,046원	11,446원
3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문화여가비+교통비 추가)	11,743원	12,551원	11,728원	12,046원	12,017원
4안: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교육비+ 교통비+통신비 추가)	11,380원	12,259원	11,437원	12,046원	11,780원

2 2024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산정안

❑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31개 시군 2024년 생활임금(4개의 안)

○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31개 시군 2024년 생활임금(4개의 안)은 다음 표와 같음

○ 특히 4안의 경우에는 2024년 기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은 성남시로 11,913원('23년 대비 1.6% 상승)이고, 가장 낮은 생활임금은 동두천시로 10,804원('23년 대비 7.3% 상승)으로 산정됨

[표 4-2]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생활임금(4개의 안)

(단위: 원)

시군	1안: 기본	2안: 1안+문화여가비	3안: 2안+교통비	4안: 3안+통신비 -문화여가비 제외
경기도	11,159	11,446	12,017	11,780
가평군	10,442	10,710	11,244	11,023
고양시	10,762	11,038	11,589	11,361
과천시	11,178	11,466	12,037	11,801
광명시	10,840	11,119	11,673	11,444
광주시	10,710	10,985	11,533	11,306
구리시	10,718	10,994	11,542	11,315
군포시	10,780	11,057	11,609	11,380
김포시	10,764	11,041	11,591	11,363
남양주시	10,629	10,902	11,446	11,221
동두천시	10,235	10,498	11,021	10,804
부천시	10,813	11,091	11,644	11,415
성남시	11,285	11,575	12,153	11,913
수원시	10,832	11,110	11,664	11,434
시흥시	10,698	10,973	11,520	11,294
안산시	10,747	11,023	11,573	11,345
안성시	10,607	10,880	11,422	11,197
안양시	11,094	11,380	11,947	11,712
양주시	10,530	10,801	11,339	11,116
양평군	10,490	10,759	11,296	11,073
여주시	10,545	10,816	11,356	11,132
연천군	10,536	10,807	11,346	11,123
오산시	10,651	10,925	11,470	11,244
용인시	11,020	11,303	11,867	11,633
의왕시	10,859	11,138	11,693	11,463
의정부시	10,517	10,788	11,325	11,102
이천시	10,947	11,229	11,788	11,556
파주시	10,808	11,085	11,638	11,409
평택시	10,885	11,165	11,721	11,491
포천시	10,468	10,737	11,272	11,050
하남시	10,988	11,271	11,833	11,600
화성시	10,978	11,261	11,822	11,589

3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방안[13)]

❑ '22년에 경기도 담당자, 31개 시군 담당자, 26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요약한 결과,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시 적합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남

○ 1순위: 공공성이 있는 관내 대학, 중대형 병원, 은행, 초중고 등

○ 2순위: 지자체로부터 R&D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을 받는 관내 기업 및 단체 등

○ 3순위: 지자체 관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자활센터, 복지센터 등

○ 4순위: 지자체로부터 조세감면이나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기업 및 단체 등

○ 5순위: 지자체내에 입지하는 중앙기관의 지역본부(교육청,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

○ 6순위: 지자체와 공공조달계약을 통하여 수혜를 받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 등

❑ '22년에 경기도 담당자, 31개 시군 담당자, 26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요약한 결과,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촉진방향

- 1순위: 생활임금 적용기관에 유·무형적 인센티브 제공
- 2순위: 지역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생활임금제 확산 노력
- 3순위: 노사정 협치 모델을 통한 생활임금 적용기관 선정하여 추진
- 4순위: 지역내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저변 확산을 위한 확대 추진

○ 생활임금 적용기관에 유·무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 1순위: 생활임금 적용기관·기업(특히 사회적기업)에게 지자체가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도록 지원

13) 경기연구원(2022),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액) 수립 및 향후 추진 방향"의 일부 내용을 발췌.

- 2순위: 생활임금 적용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 추진
- 3순위: 생활임금 적용기관·기업에 지자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및 단체의 보조금 지원 시 가점부여
- 4순위: 생활임금 적용기관·기업이 공공 조달계약 시 가점부여
- 5순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부문이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
- 6순위: 생활임금 적용기관·기업을 지자체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홍보 추진

REFERENCE

참고문헌

강영훈(2022).『2023년 생활임금제 산정 모형 수립』, 울산연구원.

김군수 외(2021).『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향후 추진 방향』, 경기연구원.

김군수 외(2022).『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방안』, 경기연구원.

김군수(2020).『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모형 수립』, 경기연구원.

김진하·정현철(2021).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완역할 계속하되 산정방식 합리화하고 영향력 확대 필요",『ISSUE PAPER』, 서울연구원.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2023.6.26.).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2023.7.19.).

"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 제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2023.4.4.).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2023.6.26.).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공고 제2023-32호(2023.5.2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2022.7.29.).

경기도 노동정책과 내부자료.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기준 중위소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남양주시. "2023년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은행. “기준금리”.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

국정모니터링시스템. “http://www.index.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down.moli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index.jsp”.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s://www.reb.or.kr/r-one/main.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EIndex.jsp”.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living wage calculation plan for Gyeonggi-do and a living wage calculation plan for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in 2024.

The 2024 living wages in Gyeonggi-Do are derived through basic classification by four standards: the household expenditure, earned income, and household income standards as well as the previous year's living wages standard. The proposals for living wages in 2024 derived as such are 11,159 won (Proposal 1) - 12,017 won (Proposal 3)

- Proposal 1 is calculated as 11,159 won by adding housing and education costs to the relative poverty baseline.
- Proposal 2 is calculated as 11,446 won by adding cultural leisure costs to Proposal 1.
- Proposal 3 is calculated as 12,017 won by adding transportation costs to Proposal 2.
- Proposal 4 is calculated as 11,780 won, including communication costs in the value at which housing,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costs are added to the relative poverty baseline.

The 2024 living wage plan for 31 cities and counties was derived by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Proposal 4, among the 31 cities and counties, the highest living wage is Seongnam-si, which is 11,913 won (1.6% increase compared to 2023), and the lowest living wage is Dongducheon-si, which is calculated to be 10,804 won (7.3% increase compared to 2023).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expand the living wage to the

private sector

Suitable institutions for expansion into the private sector include, first, public universities, medium and large hospitals, bank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Gyeonggi-do, secon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that receive various financial support such as R&D funds, facility funds, and operating funds from local governments, and third, within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Analyzed as social enterprises, women's enterprises, self-reliance centers, welfare centers, etc.

Keyword Living Wages, Expansion to Private Sector

부록

1.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기초자료

Gyeonggi Research Institute

REFERENCE

부록

1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기초자료

❑ 가계지출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부록 표-1] 2022년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원)

가계지출항목별	전국가구	도시가구
가계지출	4,779,885	4,804,543
소비지출	3,369,865	3,370,172
식료품·비주류음료	471,165	472,928
주류·담배	44,054	43,595
의류·신발	188,128	191,196
주거·수도·광열	311,689	316,885
실제주거비	75,694	78,83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59,160	157,679
보건	256,629	254,082
교통	480,099	463,457
통신	170,558	169,285
통신서비스	135,509	135,224
오락·문화	208,469	210,334
교육	273,039	280,642
학생학원교육	172,120	175,177
음식·숙박	531,498	533,514
기타상품·서비스	275,379	276,575
비소비지출	1,410,020	1,434,371

주: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통계청)

[부록 표-2]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5	0.4	0.5	2.5	5.1
경기도	1.5	0.4	0.6	2.6	5.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사교육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교육부)

[부록 표-3]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29.1	32.1	30.2	36.7	41.0
서울	41.1	45.1	45.3	52.9	59.6
부산	27.6	31.6	28.3	36.9	39.5
대구	30.3	32.9	29.0	40.0	43.7
인천	27.7	31.3	30.1	34.4	38.6
광주	26.2	27.6	29.9	32.0	35.6
대전	27.0	31.1	30.2	36.4	38.9
울산	26.5	27.4	25.4	30.0	36.7
세종	28.8	34.1	30.7	36.9	41.8
경기	32.1	35.8	31.6	39.3	44.6
강원	20.5	22.0	22.6	26.6	29.6
충북	24.4	24.3	22.5	28.4	31.8
충남	18.7	23.7	19.5	26.0	29.2
전북	20.9	23.9	22.6	27.4	29.6
전남	19.0	18.1	19.1	23.3	26.1
경북	21.4	22.5	20.7	27.9	29.4
경남	22.6	24.8	24.1	27.6	31.1
제주	23.2	25.8	27.3	29.6	31.4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월평균 주거비

[부록 표-4]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종합	6.25	6.12	5.81	5.67	5.78
경기	종합	6.37	6.27	5.95	5.90	6.09

주: 연간자료는 월간자료의 단순평균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록 표-5] 한국은행 기준금리(평균)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말기준	1.75	1.25	0.50	1.00	3.25
연평균	1.54	1.56	0.67	0.65	2.13

주: 연평균자료는 월간자료의 단순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부록 표-6] 2022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월평균 주거비

(단위: 원)

시군	주거비	시군	주거비	시군	주거비	시군	주거비
경기도	636,959	김포시	484,086	안성시	448,030	의왕시	692,250
가평군	455,802	남양주시	507,806	안양시	862,609	의정부시	435,528
고양시	636,220	동두천시	302,973	양주시	401,085	이천시	523,204
과천시	882,418	부천시	622,957	양평군	489,736	파주시	553,700
광명시	628,928	성남시	812,107	여주시	485,120	평택시	657,086
광주시	536,468	수원시	545,923	연천군	516,699	포천시	394,355
구리시	573,185	시흥시	422,434	오산시	533,132	하남시	724,463
군포시	685,881	안산시	522,101	용인시	589,888	화성시	511,813

주: 2022년 경기도 추정 주거비(43㎡)는 636,959원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전용면적(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42.5㎡ 이상 43.5㎡ 미만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해당 면적의 경기도 총계약(전용)면적은 243,011㎡, 보증금 총액은 53,599,825만원, 월세는 131,893만원임.
*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2022년 단순 월평균 2.1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4.13%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전월세전환율의 단순 월평균 6.1%의 평균인 5.1%를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문화여가비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부록 표-7] 2021년 여가생활을 위한 한 달 평균 지출 금액 및 금액대별 비중

(단위: %, 천원)

시도	3만원 미만	3~5만원	5~7만원	7~9만원	9~15만원	15만원 이상	평균
전체	14.0	9.5	16.5	2.8	19.9	37.3	149.0
서울	15.7	12.2	18.8	2.8	19.1	31.5	139.0
부산	10.2	10.5	19.2	4.3	21.3	34.5	144.0
대구	10.0	7.5	19.0	2.6	24.3	36.6	143.0
인천	8.0	9.3	13.8	2.4	22.2	44.2	156.0
광주	4.7	6.6	15.3	1.6	23.1	48.7	187.0
대전	9.9	6.0	13.9	1.0	20.7	48.5	182.0
울산	19.3	18.3	18.0	7.1	15.2	22.0	99.0
세종	9.1	5.3	13.7	2.9	16.2	52.8	191.0
경기	16.4	8.0	15.1	3.3	20.1	37.1	145.0
강원	19.4	12.1	19.2	1.2	15.1	33.0	133.0
충북	16.1	5.0	19.9	-	18.1	40.9	162.0
충남	17.7	7.9	13.5	1.5	11.9	47.6	181.0
전북	13.1	10.1	11.2	6.3	21.9	37.4	144.0
전남	19.0	11.4	20.8	2.2	17.4	29.2	130.0
경북	12.2	15.0	19.3	1.7	23.6	28.1	129.0
경남	10.1	5.8	13.3	2.2	18.7	49.9	192.0
제주	7.5	7.2	10.0	3.0	26.9	45.4	12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근로자 임금 –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부록 표-8] 전국 근로자 월평균 임금(5인 이상)

(단위: 원)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임금총액	3,696,314	3,818,727	3,846,401	4,038,749	4,235,853
상용임금총액	3,894,951	4,012,121	4,022,975	4,231,358	4,445,889
상용정액급여	3,067,187	3,194,625	3,379,790	3,379,790	3,519,989
상용초과급여	234,464	241,039	242,390	251,673	265,192
상용특별급여	593,300	576,456	519,781	599,895	660,709
임시일용임금총액	1,613,058	1,725,809	1,913,878	1,913,878	1,978,13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록 표-9] 2022년 시·도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현황(5인 이상)

(4월 기준, 단위: 원)

시도	상용월급여액			상용특별급여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전국	3,717,328	3,458,183	259,145	352,271
서울	4,082,853	3,902,156	180,697	472,405
부산	3,404,468	3,220,150	184,319	234,289
대구	3,202,101	2,975,417	226,684	224,192
인천	3,418,862	3,166,608	252,254	279,763
광주	3,284,566	3,063,731	220,835	314,755
대전	3,556,267	3,395,644	160,623	254,567
울산	3,725,381	3,289,015	436,366	807,213
세종	3,685,371	3,346,826	338,545	298,585
경기	3,751,651	3,500,180	251,471	276,333
강원	3,285,138	3,070,433	214,705	182,580
충북	3,439,403	3,101,977	337,427	297,616
충남	3,669,868	3,300,635	369,233	339,980
전북	3,192,759	2,912,969	279,791	333,286
전남	3,445,263	3,141,087	304,175	420,767
경북	3,563,537	3,189,848	373,690	390,691
경남	3,560,180	3,215,398	344,781	334,082
제주	3,036,703	2,904,723	131,980	179,622

주: 산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이며, 임금은 세금공제 전 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가계소득 -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부록 표-10] 전국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1인 가구	1,707,008	1,757,194	1,827,831	1,944,812	2,077,892
2인 가구	2,906,528	2,991,980	3,088,079	3,260,085	3,456,155
3인 가구	3,760,032	3,870,577	4,194,701	4,194,701	4,434,816
4인 가구	4,613,536	4,749,174	4,876,290	5,121,080	5,400,964
5인 가구	5,467,040	5,627,771	5,757,373	6,024,515	6,330,688
6인 가구	6,320,544	6,506,368	6,628,603	6,907,004	7,227,981

자료: 국정모니터링시스템. "기준 중위소득".

[부록 표-11]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2022.7.29.).

[부록 표-12]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18년 43%, '19년 44%, '20~21년 45%로 변화.
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2022.7.29.).

[부록 표-13] 2021년 시·도별 평균 가계소득

(단위: 만원)

시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전국	6,414	4,125	1,160	426	703
수도권	7,022	4,749	1,117	514	643
서울	7,103	4,852	978	627	646
인천	6,293	4,207	1,055	375	656
경기	7,123	4,790	1,239	456	638
비수도권	5,832	3,529	1,201	341	761
부산	5,679	3,467	1,134	361	718
대구	5,558	3,488	982	385	704
광주	6,223	4,050	1,072	344	757
대전	6,452	4,366	1,053	370	663
울산	6,739	4,787	798	427	727
세종	7,751	5,437	1,113	535	666
강원	5,459	3,080	1,106	412	862
충북	6,089	3,777	1,301	280	731
충남	5,719	3,496	1,290	241	694
전북	5,947	3,398	1,303	414	831
전남	5,739	3,023	1,502	312	902
경북	5,606	3,134	1,423	269	780
경남	5,460	3,181	1,173	301	804
제주	6,227	3,630	1,450	466	681

주: 통계청 통계표의 연도는 2022년으로 조사기준 연도이며, 소득자료는 조사연도의 전년 기준 2021.1.1. ~2021.12.31.) 자료로 2021년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